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32호 서식] <개정 2021. 9. 17.>

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

1. 건설엔지니어링명						
2. 건설엔지니어링개요						
수급인 (대표회사)	상호		대표자		소재지	
3. 건설엔지니어링개요						
도급금액	원	계약일		준공예정일		
해당연도 도급금액	원	해당연도 계약일		해당연도 준공예정일		

4.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(해당연도)

하도급할 주요 공종	하도급 대상자				하도급 용역				
공종명	상호 및 대표자	소재지	등록업종	선정 방식	용역명	물량	하도급 금액		
							①하도급 부분금액(A)	②하도급 계약금액(B)	③하도급율 (B/A)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:
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

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:
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

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:
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○○ 귀하

첨부서류	1. 하도급 예정 공정표 2.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

작성방법

1.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,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.
2.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(하수급인)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.
3.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.
4. ①하도급부분금액 및 ③하도급율은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)